

□□농림부 발표 자료□□

97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확정내용

농림부는 「농림수산사업통합 실시요령」을 「농림사업실시규정」으로 변경하고, 내용을 일부 개정하여 사업분류체계를 바꾸고 유사사업을 통폐합하며 신규 사업을 신설하고 사업신청절차 및 사업신청서의 심의방법을 개선하였다.

아울러 97년도 사업시행 요령과 98년도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안내를 담은 「1997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를 96. 11. 18. 확정하고 12월5일까지 시도, 시군구, 읍면동, 농촌지도소, 농·축·임·삼협 등 관계기관에 배부할 예정이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① 품목별 사업분류체계를 도입하고 유사사업을 통폐합하였다.

▲농업농촌구조개선, 농축산물생산유통, 임업 및 산촌지원 등 기능별 사업분류체계를 농업인들이 이해하기 쉽게하기 위하여 농업(식량작물)구조개선, 농업(원예특요작물)구조개선, 축산업구조개선, 농촌개발, 임업 및 산촌구조개선 등 품목별 사업분류체계로 바꾸었다.

▲또한 단위사업도 정부예산 과목(세항)을 기준으로하여 유사사업을 통폐합하고 27개 신규사업을 신설하여 종전 148개 사업을 134개 사업을 조정하였다. (신규사업 목록 참조)

② 사업시행지침의 형식을 개선하고 법인경영체의 사업신청 대상 자격을 강화하였다.

▲사업시행지침에는 「97년 사업시행 요령」과 「98년 사업신청 및 지원 대상자 선정안내」사항을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농업인들이 필요한 사항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법인경영체의 경우는 총출자액 1억원이상인 법인, 사업에 따라 운영실적이 1~3년 이상인 법인, 조합원 1인의 출자액이 총출자액의 25%이내인 법

인, 생산 주목적인 법인은 총출자액의 50%이상을 생산요소인 현물을 출자한 법인에게 사업참여 자격을 한정함으로써 부실한 법인경영체가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도록 하였다.

▲종전에는 지원대상자 선정 시 생산자단체를 우대하였으나, 앞으로는 농업인과 생산자단체를 동등한 기준에서 심사하도록 하였다.

③ 시군구에서 사업신청서를 심사할 때에는 생산자단체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심사하도록 하였다.

▲시장군수가 사업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농촌지도소 또는 임협에 사업성 검토를 하여야 하며, 이때 농촌지도소는 읍면동 및 농·축·임·삼협조합의 직원과 합동으로 현지확인 또는 조사를 한다.

▲시군구는 농촌지도소로부터 사업성검토결과를 제출받아 사업신청서를 심사하되 농·축·임·삼협조합의 직원과 합동실무검토반을 구성·운영한다.

▲특히 사업성검토 대상사업을 종전 지원신청금액 1천만원 이상 사업에서 3천만원(농업인 후계자 및 쌀전업농은 2천만원)이상으로 축소함으로써 소액지원사업에 대한 심사절차를 간소화하여 일선기관의 업무를 줄이고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④ 사업신청서에 대한 시군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방법을 일선기관의 업무량을 줄이는 반면에 농업인에 대하여는 보다 실질적인 심의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였다.

▲일부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는 생산자단체장 및 전문 농림어업인대표의 참여가 적어 형식적인 심의에 그치는 경우가 있어,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에 이들이 최대한(생산자단체장 10인, 농림어업인대표 14인) 참여하도록 하고, 공개회의를

통하여 사업신청서를 실질적으로 심의하도록 하였다.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가 의결로 정하는 사업은 분과위원회 또는 품목별 소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로 갈음하도록 심의의 효율성을 높였다.

▲신청금액이 20억원(총사업 비로 환산할 경우 30억원 수준)이상인 대형사업의 경우는, 시군구의 요청이 있으면 시도지사가 전문가를 지정하여 검토하게 한 후 도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직접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일부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였다.

⑤ 일부 농업인들이 예산을

요구만하면 전액 반영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군구가 시도지사에게 제출한 예산요구 내용을 홍보할 때에는 『예산 등의 사정으로 지원우선순위가 변경되거나 지원예정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감액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시군구에서 예산안을 작성하고 지원대상자를 정할 때 『영농 또는 영림규모의 현저한

감소로 지원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사업포기나 이농시와 마찬가지로 우선순위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종전에는 사업계획을 읍면을 거쳐 시군에 신청하였으나, 농업인의 편의를 위하여 앞으로는 읍면동 또는 시군구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신규사업(27개 사업)

창립35주년 및 조합전이 용대회 성황리에 열려

지난 12월13일 한국양봉축산

협협동조합(조합장 조상균)은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 파크호텔」 별관 플라자A홀에서 조합창립 35주년 및 조합전이 용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대회에 전 조합원은 물론, 축협중앙회 관계인사 및 본 협회 정해운 회장과 양봉축협 조합장들이 내빈으로 참석, 한국양봉조합의 발전을 기원해 주었다.

특히 「소비자를 위한 모임」의 강광파 이사는 특별강연에서 수입개방시대를 맞이하여 미국산 레몬과 자몽등의 한국시장 진출을 위해 벌인 책동양상을 자세히 소개한 뒤 소비자단체에서 벌꿀을 요주의대상 상품으로 관리하면서 최근 문제가 대두된 청정식품으로서의 농약·항생물질 함유도 체크하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이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한 외국산 벌꿀이 우리사장을 모두 잠식해 버릴 것이 염려된다고 경고하였다.

딩하여...』라는 표현과 『소주의 개념을 바꾼 숙성소주이기에』등의 4가지 문구가 공정거래법상 위법인 것으로 판명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따라서 (주)진로는 이를 사실을 인정하고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제9조 제1호에 해당하는 위법행위 중단 및 시정사실을 중앙일간지에 개재키로 했다고 한다. 한편 관련업체에서는 소주의 감미료로 사용되는 스테비오사이드가 빠르면 내년초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될 전망이다. 이는 재정경제원이 지난 5일 주세법 시행령을 개정, 소주에 첨가할 수 있는 감미료 종류에서 스테비오사이드를 빼도록 하겠다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통보하고 이번 회기내에 시행령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허신행 소비자보호원장은 지난달 6일 재경위 보고에서 『스테비오사이드의 유무해, 안전성에 관한 세계각국 학계와 연구기관 입장은 크게 유해 또는 무해론으로 나뉘져 있다』며 『따라서 소보원측이 현단계에서 유무해 결론을 내리기는 곤란하다』고 답변했다.

도, 도매합니다.

생로얄제리 · 벌꿀 · 화분

프로폴리스 액 : 100CC

로얄제리 병 : 50g

최상급 품임을 자랑합니다.

한국기업양봉원

대 표
손 용 범

서울시 은평구 응암4동 274-48

(02)376-5191(주야) · (0344)970-0502

국민은 : 243-24-0127-512

우체국 : 101949-0059690 · 농협 : 217014-52-120979

아 피 톨

가시옹애 및 꿀벌진드기 구제는 월동사양을 끝낸후 사양수에 아피톨을 혼합하여 딱!
1번만 급이하면 완벽하게 구제됩니다.

- 약제처리가 매우 편리합니다.
- 약효 탁월합니다.
- 안전성 안심하세요.
- 완벽한 약제는 약간 비쌉니다.

1감 12g, 12,000원에서 10,000원으로
인하하여 판매합니다.

일진실업

문의전화
(02)923-3470
927-3983(FAX)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2동 764-11. 남도빌딩 301호. 김진동